

(붙임 3)

참고 1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및 제외 항목

구 분	2015년		
	집행대상	집행제외	제외사유
목 표 액	91.5조원		
100 인건비		100 인건비 전체 제외	
200 물건비	201-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7-01 연구용역비 207-02 전산개발비 207-03 시험연구비	201-02~04 공공운영비 등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(기관운영, 정원가산 등) 205 의회비(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등) 204 직무수행경비 (직책급업무수행경비, 직급보조비, 특정업무경비)	·균분 집행 ·급여성 경비
300 경상이전	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-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-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-05 민간위탁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309 전출금	301-01~04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01-06~07 민간인 국외여비 등 301-09, 11 행사실비 보상금 등 301-05 통장이장·반장활동보상금 301-08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301-10 예술단원·운동부등 보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5 배상금등 307-01 의료 및 구료비 307-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-06~09 보험금 등 307-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 310~311 국외이전 등	·균분 집행 ·급여성 경비 ·시기도래시 집행
400 자본지출	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	407 국외자본이전	·외국지급경비
500 융자및출자	501 융자금 502 출자금	-	
600 보전재원	- -	- -	
700 내부거래	701-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-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	-	
800 예비비 및 기타	- -	- -	

참고 2 조기집행 관련 제도개선 현황(2009년~)

구 분	개 요	개선 내용	지속여부	비고
집행 절차 단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 조기 확정 ▪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·계약 ▪ 예산배정 前 계약체결 ▪ 긴급입찰 적극 활용 ▪ 개산계약 범위의 한시적 확대 ▪ 매칭펀드사업 지원재원 우선확보시 차수계약 활성화 	일반 7~40일 ⇒ 긴급 5일 재해복구공사 ⇒ 필요시 지원재원 확보시 동일 회계연도내 1차 공사계약 가능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종 료 지속 시행	실효성 미흡 시행령 개정완료('10.7)
자금 집행 방식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▪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▪ 선금제도 적극 활용 ▪ 선금 의무지급율 이하 신청 및 지급 가능 ▪ 선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범위 확대 ▪ 선금의 추가지급 허용 ▪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 ▪ 세출예산 집행제한의 예외 	의무지급률 30~50% (계약기간 60일 미만도 선금 지급 가능 - 기간삭제) 발주자 직접지급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통합 시행 종 료 지속 시행 종 료	'09 시범실시 '10. 전면실시 예규개정 기시행('10.10) 부작용 유발 부작용 유발
관계 부처 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배정 ▪ 지방교부세의 조기 배정 ▪ 조기집행 미실시 사유중심 감사 	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	
세출 예산 구조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▪ 지방채 추가발행 등 투자재원 확보 ▪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	민간이전경비, 보상금,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외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종 료	실효성 미흡
경기 부양 시책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소득층 관련경비 우선 지출 ▪ 공사의 지역제한 확대(~13.3월) ▪ 사무용품 일괄 구입 등 추진 ▪ 지방공기업을 통한 내수 진작 	종합공사 70억 → 100억 전문공사 6억 → 7억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	